

# 제179차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의결사항

심의일자 : 2023. 9. 4.(서면심의)

## 안 건 명

- 정수장 증설 및 현대화 사업 지반조사용역(용역발주심의)

## 심의결과

위 안건에 대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 주요 심의내용 및 위원별 심의 의견을 보완·반영하는 조건으로 「조건부채택」을 의결함

## **【주요 심의내용】**

- 제1장 일반사항 4.과업의 변경 조건에 대하여 도심지 조사 특성을 고려한 “지장물의 영향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추가 기재 검토 필요
- 제2장 조사업무에 폐공처리 계획 수립(p.12) 추가 필요
  - 각종 조사를 위한 시추공은 「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폐공 처리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3장 성과품작성 업무에 재료원 조사의 필요 유무를 확인하고, 과업 내용을 상세히 기술할 필요가 있음(p.15)
  - 토취장, 골재원, 석산, 사토장 등의 과업내용 기술

붙임 : 위원별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각 1부

본 검토서는 2023.8.28.(월) 18:00까지 e-mail(hjyhgu@seoul.go.kr)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: 제179차 정수장 증설 및 현대화 사업 지반조사 용역

분야	검 토 의 견	비 고
토질 및 기초	<p>1. 과업 수행 기간의 명료화 요망</p> <p>(1). 제1장 일반사항 3.과업의 개요 나. 과업 수행 기간을 착수일로부터 2024.06.30.일로 명시 되어 있음, 발주 시기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 착수일로부터 00일까지로 제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</p> <p>2. 과업의 변경 조건에 대한 추가 내용 적용</p> <p>(1). 제1장 일반사항 4.과업의 변경 조건에 대하여 도심지 조사 특성을 고려한 “지장물의 영향”을 적용 할 수 있도록 추가 기재 검토 필요</p> <p>3. 건설관리기술인의 명칭 정리 필요</p> <p>(1). 제1장 20.안전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특별사항에서 위험성 평가실시 결과를 발주부서(건설기술인 경우)에 제출로 기재되어 있음, 건설기술인을 -&gt;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명칭으로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이 타당함.</p> <p>4. 시추공 처리 결과의 자료(사진등) 제출 필요</p> <p>(1). 제3장 2.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등에 시추공의 처리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도록 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</p>	
종합의견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조건부채택</p> <p>※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5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.</p>	

2023년 8월 28일

심의위원 :

본 검토서는 2023.8.28.(월) 18:00까지 e-mail(hjyhgu@seoul.go.kr)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: 제179차 정수장 증설 및 현대화 사업 지반조사 용역

분 야	검 토 의 견	비 고
	<p>1) 제2장 조사업무에 보완 및 추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지표지질조사 내용 추가(p.10~11).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지질구조도를 작성하고, 지질재해 등의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함.</li></ul></li><li>○ 폐공처리 계획 수립(p.12).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각종 조사를 위한 시추공은 「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폐공처리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</li></ul></li><li>○ 보완조사 항목 추가(p.14).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현장조사 및 실내시험 결과로 지질이상대가 확인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완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</li></ul></li></ul> <p>2) 제3장 성과품작성 업무에 재료원 조사의 필요 유무를 확인하고, 과업내용을 상세히 기술할 필요가 있음(p.15)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토취장, 골재원, 석산, 사토장 등의 과업내용 기술</li></ul> <p>3) 제3장 성과품작성 업무에 다음 사항이 보완되어야 함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설계(지반)정수 산정(p.15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최신 분석방법 또는 확률·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설계정수 산정</li></ul></li></ul>	
종합의견	<b>조건부채택</b>	

2023년 8월 28일

심의위원 :

본 검토서는 2023.8.28.(월) 18:00까지 e-mail(hjyhgu@seoul.go.kr)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: 제179차 정수장 증설 및 현대화 사업 지반조사 용역

분 야	검 토 의 견	비 고
	<p>목차 중</p> <p>17 설계 성과품 ---&gt; 용역 성과품</p> <p>18 설계 등 손해배상 ---&gt; 용역 등 손해배상</p> <p>19 준수사항 및 설계시 ---&gt; 준수사항 및 용역 수행시</p> <p>P2 6 가 2) 내실있는 설계가 되도록 ---&gt; 내실있는 지반조사 용역이 되도록</p> <p>P3 라) 4) * 설계용역 시행 ---&gt; 지반조사 용역 시행</p> <p>P5 10 가 설계공정 ---&gt; 지반조사 용역공정</p> <p>P6 13 나 설계용역 수행 중에 주요설계과업 ---&gt; 지반조사용역 수행 중에 주요 용역과업</p> <p>다 설계과업의 변경 ---&gt; 용역과업의 변경</p> <p>설계변경에 필요한 ---&gt; 용역변경에 필요한</p> <p>P7 17 설계성과품 ---&gt; 용역 성과품</p>	

	<p>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~ ~ ~ ~)</p> <p>대하여 ---&gt; 최종 용역보고서에 대하여</p> <p>18 설계 등 ---&gt; 용역 등 ----</p> <p>18 준수사항 및 설계시 ---&gt; 준수사항 및 용역 수행시</p>	
종합의견	<p><b>조건부채택</b></p> <p>※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5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.</p>	

2023년 8월 28일

심의위원 :

본 검토서는 2023.8.28.(월) 18:00까지 e-mail(hjyhgu@seoul.go.kr)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: 제179차 정수장 증설 및 현대화 사업 지반조사 용역

분 야	검 토 의 견	비 고
시공	1. 『정수장 증설 및 현대화 사업 지반조사 용역』 과업 내용서의 일부 페이지 ( 1 ~ 4, 12, 13, 15, 16)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2. 용역 발주방식은 적정한 것으로 보임	
종합의견	<b>조건부채택</b>	

2023년 8월 28일

심의위원 :

※ 서면심의이므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한글파일 별도 송부)

#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: 제179차 정수장 증설 및 현대화 사업 지반조사 용역

분 야	검 토 의 견	비 고
	<p>1. 지반조사 관련 아래의 내용을 과업내용서에 보완하기 바람</p> <p>1) 지반조사에 앞서 지하매설물(전기, 상수도, 통신, 가스 등) 현황을 면밀히 조사후 실시해야 하며, 특히 중요 지점(하천, 하수박스 등)은 반드시 보링(NX 구경)을 실시하고 의심나는 위치에는 추가 실시하여 원위치 DATA를 확보하여야 한다.</p> <p>2) 실내 역학시험(일축, 삼축 등)을 충분히 실시하여 토질정수를 선정하고 이를 가시설 등 설계에 반영한다.</p> <p>3) 객관적인 물성치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시추조사의 수량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.</p> <p>4) 역학시험(c, <math>\phi</math>)은 모든 시추공에 대하여 실시한다.</p> <p>2. 지반조사에 따른 과업내용서이므로 다수 작성된 설계에 대한 명칭은 전반적으로 수정 필요</p> <p>- 소제목 : <u>설계</u> 성과품, <u>설계</u> 등 손해배상 등</p> <p>- P2) 6. 가. 2)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~ 내실 있는 <u>설계</u>가 ~</p> <p>- P3) 6. 라. 4) ※ <u>설계용역</u> 시행과정에서 ~</p> <p>3. 제2장 조사업무 1. 일반사항 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 바람</p> <p>- 지반조사에 대한 자료는 '국토지반정보포털시스템'을 활용하고 조사 결과 자료는 발주기관에서 '국토지반정보포털시스템'에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전산파일형식(한글, 워드, PDF, CAD 등)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.</p>	
종합의견	조건부채택	

2023년 8월 28일

심의위원 :